

선 람	기관의 장

시 G 보

제32호 2021. 8. 11.(수)

조 례

광양시 조례 1829호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광양시 조례 1830호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9
광양시 조례 1831호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14
광양시 조례 1832호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광양시 조례 1833호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광양시 조례 1834호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	35

규 칙

광양시 규칙 879호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36
광양시 규칙 880호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6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1-302호 광양시 도로구간 변경(연장) 고시	48
광양시 고시 제2021-303호 광양시 도로구간(2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50
광양시 고시 제2021-306호 광양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	55
광양시 고시 제2021-307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57
광양시 고시 제2021-310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58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1-1538호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60
---	----

기 타

광양시 보건소 공고 제2021-10호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60
---	----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1944, 행정 1945)

광양시 조례 제1829호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를 시행”을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청년정책위원회”를 “제8조에 따른 광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시장은”을 “시장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조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조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제9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맡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실비보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 회의”를 “위원회”로, “전체회의”를 “등 회의”로, “실비”를 “수당 및 여비”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청년정책 사업의 시행에 기여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청년단체의 경우 제2조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청년의 날 지원) 시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모전·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청년위원회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u>조례</u> 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광양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조례</u> 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 ----- ----- ----- -.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u>인</u> 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 ----- ----- <u>시행</u>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청년정책위원회</u> ,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u>제8조에 따른 광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u>시장</u> 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u>시장</u> 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u>조례</u> --

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8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4. (생략)

④ (생략)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
--.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

② -----
- 심의·조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3.·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② 제1항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청년단체의 경우 제2조제1

② (생 략)

③ 제1항제8호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청년단체는 5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봉사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광양시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삭 제>

제18조(청년의 날 지원) 시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 강화)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모전·이벤트

<신 설>

제18조 (생 략)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 등
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
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광양시 조례 제1830호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의 확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인식 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관련단체·전문가·기관 등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양시(이하 “시” 라고 한다)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3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개선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개선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4.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5. 시민의 무장애도시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라 계획·설계·시공하여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주(施設主)에 대한 지원
2. 무장애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3. 무장애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양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및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링 참여단 모집,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양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무장애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복지·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부진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수당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구성에 기여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조례 제1831호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하강체험시설”이란 관리실, 휴게실, 모노레일, 출발지, 도착지 등 공중하강체험을 위해 설치하여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체험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위탁료”란 체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시설운영 및 이용시간) ①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중하강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매표 및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시설이용료 및 감면)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험시설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수익 감소 등의 사유로 이용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홍보 등을 위한 수탁자의 자율적인 이용료 인하는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또한,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나 기념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시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설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체험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을 원하는 이용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납부한 시설이용료를 반환한다.

가. 이용일 5일 전까지: 전액

나. 이용일 4일 전부터 당일까지: 시설이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시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 사유나 천재지변, 우천으로 체험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2. 유류 등 화재 위험 물질을 소지 한 사람

3. 시설물 파손 및 음주 등의 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설물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물 이용자는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시설물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시설물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이용자가 진다.

④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위탁) ① 시장은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체험시설 수탁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수탁자 선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료의 징수) ① 시장은 체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탁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위탁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의 사고나 시설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체험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조물 안전성 검토 등을 시행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반에 대해 수시검사와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안전사고 방지 및 체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전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중 실수·부주의·고의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설이용료에 대한 변동·조정이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

을 받아 변동·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이행보증금) 수탁자는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료를 분할 납부하게 되는 경우 위탁료의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체험시설의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험시설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 지도·감독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파산, 부도 등으로 수탁자가 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탁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12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할 경우 후속 운영자가 선정될 때까지 운영하여야 하며 후속 운영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이용료
(상한액, 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체 (20인 이상)	비고
공중하강 체험시설	일반(19세 이상)			25,000	18,000	
	19세 미만, 군인			20,000	15,000	
	13세 이하			10,000	10,000	
	할인	광양시민, 명예시민	19세 이상, 65세 미만	12,500	12,500	50% 감면
			19세 미만, 65세 이상	10,000	10,000	
		장애인, 유공자, 수급자	19세 이상, 65세 미만	17,500	17,500	30% 감면
19세 미만, 65세 이상			14,000	14,000		
모노레일	편도			1,000		
	왕복			2,000		
	할인	광양시민, 명예시민	편도	500		50% 감면
			왕복	1,000		
		장애인, 유공자, 수급자	편도	700		30% 감면
			왕복	1,400		

※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별표 2]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4조제3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50%
• 광양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 19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	3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광양시 조례 제1832호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생활폐기물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근시간대 혼잡 및 수거작업의 효율성, 관광활성화 등의 사유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하(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1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에서 고시한 쓰레기 종량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청문)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 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제거 후 배출 ※ 소주병, 맥주병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4. 금속캔	• 음료, 주류,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 통 등)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5. 고철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 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합성수지 용기 •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 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8.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 (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9.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10.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함에 배출
11.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별표 2]

쓰레기 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구 분	봉 투 용량(ℓ)	봉투규격 (높이×나비, cm)	호칭두께(mm)
일 반 용 (재 사 용 봉 투)	5 ℓ	46.5 × 26	0.025
	10 ℓ	56.5×33	0.025
	(10 ℓ)	53.5×36 (24+6×2)	0.025
	20 ℓ	69.5 × 42	0.030
	(20 ℓ)	65.3×45 (31+7×2)	0.030
	50 ℓ	91.5 × 56	0.040
공 공 용	20 ℓ	69.5 × 42	0.030
	50 ℓ	91.5 × 56	0.040
관 급P.P마 대	20kg	70 × 45	26올/cm
	40kg	88 × 57	28올/cm
	60kg	101 × 65	28올/cm
공 공 용 P . P 마 대	40kg	88 × 57	28올/cm
	60kg	101 × 65	28올/cm

비고 1. 재사용 봉투의 나비는 접힌부분을 펼친 전체의 나비($b=b_1+2b_2$)로 하고 b_1 은 봉투의 머리 나비, b_2 는 접힌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이다.

2. P.P마대의 호칭두께 “올/cm”는 위사올/m×경사올/m 직 조 밀 도 로 한다.

3. 기타 규정되지 않는 부분은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준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8조의3(생활폐기물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u> <u>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출근시간대 혼잡 및 수거작업의 효율성, 관광활성화 등의 사유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u> <u>2. 작업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하(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u> <u>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u>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다른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한 때 5. <u>그 밖에 판매소의 지정 취소 가 정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u> <u><신설></u>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u>시에서 고시한 쓰레기 종량 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 하는 경우</u> <u>제21조의2(청문) 시장은 제21조 에 따라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 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u>
--	--

광양시 조례 제1833호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생활폐기물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근시간대 혼잡 및 수거작업의 효율성, 관광활성화 등의 사유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하(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1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에서 고시한 쓰레기 종량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청문)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 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제거 후 배출 ※ 소주병, 맥주병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4. 금속캔	• 음료, 주류,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압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 통 등)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5. 고철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 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합성수지 용기 •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 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8.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9.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 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10.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함에 배출
11.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별표 2]

쓰레기 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구 분	봉 투 용량(ℓ)	봉투규격 (높이×나비, cm)	호칭두께(mm)
일 반 용 (재 사 용 봉 투)	5 ℓ	46.5 × 26	0.025
	10 ℓ	56.5×33	0.025
	(10 ℓ)	53.5×36 (24+6×2)	0.025
	20 ℓ	69.5 × 42	0.030
	(20 ℓ)	65.3×45 (31+7×2)	0.030
	50 ℓ	91.5 × 56	0.040
공 공 용	20 ℓ	69.5 × 42	0.030
	50 ℓ	91.5 × 56	0.040
관 급P.P마 대	20kg	70 × 45	26올/cm
	40kg	88 × 57	28올/cm
	60kg	101 × 65	28올/cm
공 공 용 P . P 마 대	40kg	88 × 57	28올/cm
	60kg	101 × 65	28올/cm

비고 1. 재사용 봉투의 나비는 접힌부분을 펼친 전체의 나비($b=b_1+2b_2$)로 하고 b_1 은 봉투의 머리 나비, b_2 는 접힌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이다.

2. P.P마대의 호칭두께 “올/cm”는 위사올/m×경사올/m 직 조 밀 도 로 한다.

3. 기타 규정되지 않는 부분은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준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3(생활폐기물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u> <u>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출근시간대 혼잡 및 수거작업의 효율성, 관광활성화 등의 사유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u> <u>2. 작업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하(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u> <u>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u>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다른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한 때 5. <u>그 밖에 판매소의 지정 취소 가 정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u> <u><신설></u>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u>시에서 고시한 쓰레기 종량 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 하는 경우</u> <u>제21조의2(청문) 시장은 제21조 에 따라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 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u>
--	--

광양시 조례 제1834호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규칙 제879호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는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조(수탁자 공개모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수탁자를 모집할 때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수탁자 모집 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날까지 시장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운영개시 전에 세부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각종 대장 및 서식 비치) 수탁자는 별지 서식의 대장과 서식을 비치하고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2.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수입내역부(별지 제4호서식)
3.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지출내역부(별지 제5호서식)
4.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장비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5.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안전점검일지(별지 제7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이용료(제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체 (20인 이상)	비고
공중하강 체험시설	일반(19세 이상)			25,000	18,000	
	19세 미만, 군인			20,000	15,000	
	13세 이하			10,000	10,000	
	할인	광양시민, 명예시민	19세 이상, 65세 미만	12,500	12,500	50% 감면
			19세 미만, 65세 이상	10,000	10,000	
		장애인, 유공자, 수급자	19세 이상, 65세 미만	17,500	17,500	30% 감면
19세 미만, 65세 이상			14,000	14,000		
모노레일	편도			1,000		
	왕복			2,000		
	할인	광양시민, 명예시민	편도	500		50% 감면
			왕복	1,000		
		장애인, 유공자, 수급자	편도	700		30% 감면
			왕복	1,400		

※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					
신청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주소				
	재산현황	고정자산 : 원, 유동자산 : 원			
기타(특이사항)		※ 현재 운영 중인 시설 및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위탁 기간 연장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신청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주소				
	재산현황	고정자산 : 원, 유동자산 : 원			
기간	당초	부터	까지	연장	부터 까지
사유					
기타사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서식]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운영일지

			담당자	팀장	과장	결 재
(년 월 일)						
근 무 자	성 명 인					
문 서 처 리	전일까지 미 결	금일접수	금일처리	미 결	비고	
장비 및 물품 관 리 상 태						
금 일 업 무 취 급 현 황						
계 획 또 는 진 행 중 인 사업 및 행사						
특 기 사 항						
비 고	이용자 성별현황 (남, 여)					

[별지 제4호서식]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수입내역부

월 일	적 요	납 부 자	수 입 액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지출내역부

월 일	적 요	채 주	지 출 액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장비관리대장

[illegible]

[별지 제7호서식]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안전점검 일지

(점검일: 년 월 일(월 주차 정기점검))			담당자	팀장	과장	결 재
점 검 자	직 성 명 인					
시 설 현 황			점검결과	조치내용	비고	
시 설 명 칭	규 격	준공일				

광양시 규칙 제880호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생활보조액 산정) ① 조례</u> <u>제6조제2항의 생활보조액은 피</u> <u>해자의 최근 1년 월평균 소득액</u> <u>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 개월</u> <u>을 곱하여 산출한다.</u> <u>② 피해자의 월평균소득 파악이</u> <u>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기초생</u> <u>활보장법」 제2조제7호의 규정</u> <u>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피해자의</u> <u>월평균소득으로 한다.</u>	<u><삭 제></u>

광양시 고시 제 2021-302호

광양시 도로구간 변경(연장)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1.

광 양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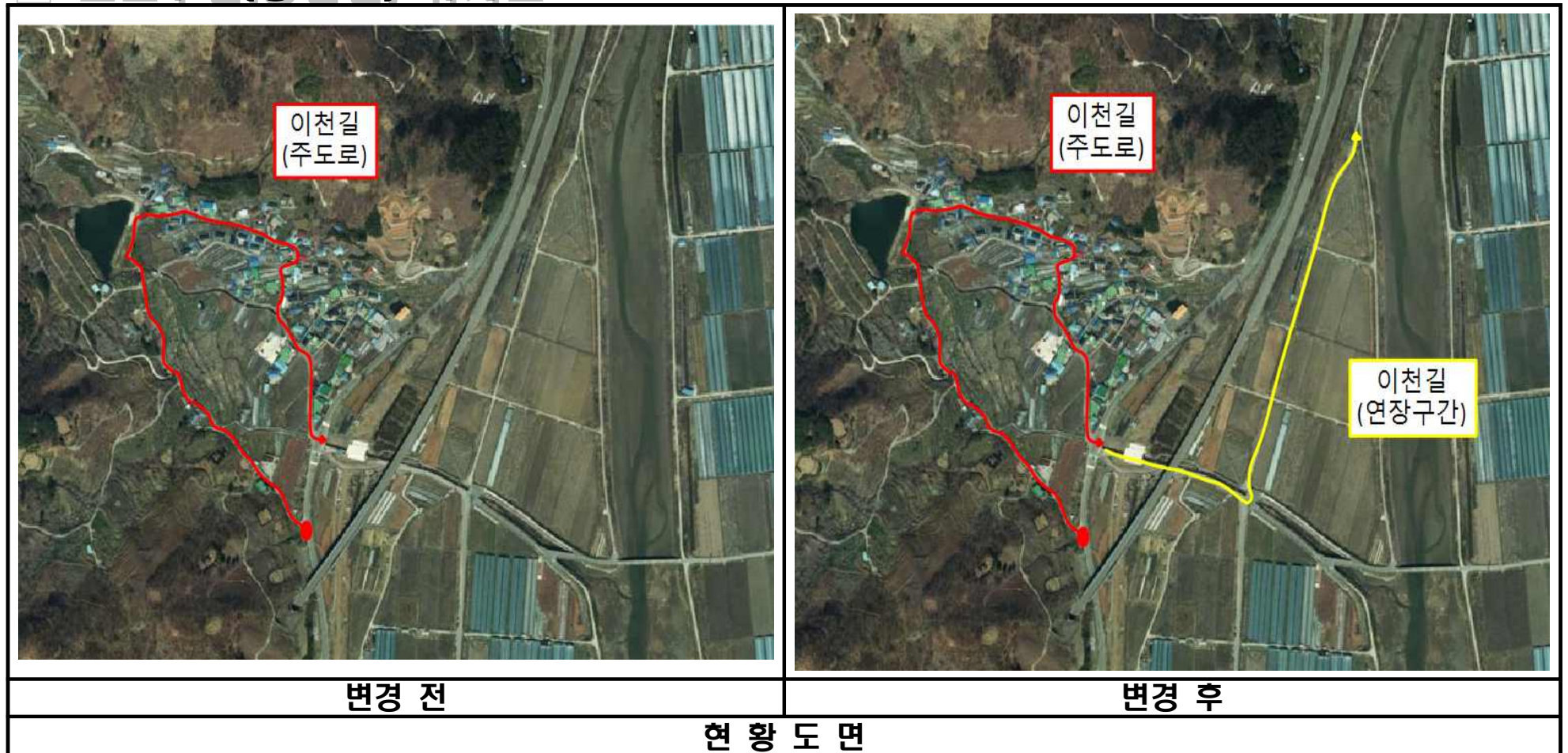
1. 고 시 일 : 2021. 8. 11.
 2.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연장)(붙임조서 참조)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2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함

붙임 : 도로명 변경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구간 변경(연장) 조서

연번	도로명		시점	종점	기초 번호	길이 (m)	도로 위계	폭(m)	기초 간격 (m)	중심선	도로구간 변경사유	관할 구역
1	변경전	이천길	진상면 금이리 97-3	진상면 금이리 1120-1	1 - 102	1021	길	5	20	도면 참조	도로구간 종점연장	진상면
	변경후		진상면 금이리 97-3	진상면 금이리 183-1	1 - 174	1740	길	5	20	도면 참조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광양시 고시 제2021-303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1. 8. 11.
2.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붙임조서 참조) 6건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2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구간 설정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구간 설정 조서

○ 대치로

연번	도로명	도로 구분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대치로 (1차중속도로)	로	옥곡면	옥곡면 수평리 126-1	옥곡면 수평리 660	도면 참조	260.3	9	20	413-1	413-28	대치재의 지형지물에서 인용	

○ 이천길

연번	도로명	도로 구분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이천길 (1차중속도로)	길	진상면	진상면 금이리 181-16	진상면 금이리 1174	도면 참조	68.25	4	20	137-1	137-8	행정리명에서 인용	
2	이천길 (1차중속도로)	길	진상면	진상면 금이리 181-16	진상면 금이리 1175		155.4	4	20	138-1	138-16		
3	이천길 (1차중속도로)	길	진상면	진상면 금이리 181-16	진상면 금이리 1170-2		31.6	4	20	147-1	147-4		
4	이천길 (1차중속도로)	길	진상면	진상면 금이리 181-16	진상면 금이리 1168		87.6	4	20	158-1	158-10		

○ 섬거길

연번	도로명	도로 구분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섬거5길 (1차중속도로)	길	진상면	진상면 섬거리 1535-7	진상면 섬거리 1441-1	도면 참조	167.9	4	20	51-1	51-18	행정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 대치로



○ 이천길



○ 섬거5길



광양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1.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1. 8. 11.
2.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1건(붙임조서 참조)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2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명 변경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명 변경 조사_섬거5길

연번	구분	도로명	도로구분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변경 경사유	부여방식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기존	섬거길 (종속도로)	길	진상면	진상면 섬거리 1544	진상면 섬거리 산 117-2	도면 참조	660	4	20	55-1	5-66	신청에 의한 변경	행정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변경	섬거5길 (주도로)	길								1	70		

현황도면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변경 내역〉

연번	도 로 명 주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1	진상면 섬거길 55-10	진상면 섬거5길 10	2021. 8.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2	진상면 섬거길 55-20	진상면 섬거5길 20		
3	진상면 섬거길 55-43	진상면 섬거5길 43		
4	진상면 섬거길 55-53	진상면 섬거5길 51-18		
5	진상면 섬거길 55-66	진상면 섬거5길 66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27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7. 28.

광 양 시 장

광양시 고시 제 2021 - 310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1.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매화로 847-249외 8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 27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8.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계	건물번호 부여 9건						
1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1677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매화로 847-249	20210811	20090703	섬진강 변과 매화 재배지에서 명명	
2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산123-2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명주로 501	20210811	20210804	옛 지명에서 인용	
3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293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방죽로 15-15	20210811	20090902	옛 지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276외 63필지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수동로 22 (성황동)	20210811	20210210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마을지명에서 인용	
5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77-7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6	20210811	20081001	법정리명에서 인용	
6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1076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삼정길 179-34	20210811	20081001	마을지명에서 인용	
7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97-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1길 8	20210811	20090623	행정리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8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35-1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26번길 18	20210811	20200916	posco 광양제철소에서 인용 및 기초번호식 부여	
9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3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26번길 19	20210811	20200916	posco 광양제철소에서 인용 및 기초번호식 부여	

광양시 공고 제2021-1538호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개정 이유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 2021년 자치법규 일체정비(기획예산실-5511 2021.5.6.)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조례 사항에 대하여 정비 추진

※ 개선 권고 사항 :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개선 권고 조항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15조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아닌 제5조 농수산물 표준규격과 관련된 조항이므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를 제5조로 수정
 - 일본식 한자어, 쉬운 말로 고치기, 잘못된 피동표현 등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조항 일부 수정(제5조 제2항)

- 기존 : 농특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 수정 : 농특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 일본식 한자어, 쉬운 말로 고치기, 잘못된 피동표현 등 용어 정비

3. 예고기간: 2021. 8. 11. ~ 8. 31.(20일간)

4. 의견제출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31일까지 광양시장(참조: 농산물마케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arkby3857@korea.kr

2) 주 소: [5774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광양시청 2층
사) 3층 농산물마케팅과

3) 팩 스: 061-797-4176

라. 문의처: 광양시 농산물마케팅과(전화: 061-797-3566)

붙임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2.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붙임 2】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아닌 제5조 농수산물 표준규격과 관련된 조항이므로 제15조를 제5조로 수정

제8조제1항 중 “위원회는 시장이 부의하는”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명기하여”를 각각 “명확하게 적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 중 업무담당”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쉬운 말로 고치기> 및 <일본식 한자어>에 따라 정비

제9조제1호 중 “무농약농수산물”을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로 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조제목 반영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

단 중 “단체회원”을 “단체 품목”으로 한다.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잘못된 피동 표현 고치기>에 따라 정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상표관리 분야별 책임부서를”을 “시장은”으로, “명확히 지정하여”를 “총괄 및 품목별 관리부서의 담당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괄 관리부서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별 관리부서

제14조제1항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일본식 한자어>에 따라 정비

부 칙

이 조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상품목 및 품질기준) ① (생 략) ② 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기준 (이하 “품질기준”이라 한다)은 「 <u>농수산물 품질관리법</u> 」 제15 조에 따른 농수산물표준규격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같은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 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 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품질 기준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5조(대상품목 및 품질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농수산물 품질관리법</u> 」 제5조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심사) ① <u>위원회는 시</u> <u>장이 부의하는</u> 제4조에 따른 사 용승인의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② (생 략) ③ 시장은 <u>제2항</u> 의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u>명기</u> <u>하여</u>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 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u>명기하</u> <u>여</u>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심사) ① <u>위원회는</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1항</u> ----- ----- <u>명확</u> <u>하게 적어</u> ----- -----. ----- <u>명확하</u> <u>게 적어</u> -----.

④ 시장은 해당 신청자의 효과적 사용심사를 위하여 예비심사를 해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예비심사위원은 상표사용 신청품목 소관부서 공무원 중 업무담당 및 담당자로 지정한다.

제9조(예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사용심사 없이 해당 신청서 제출만으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단체일 경우에는 소속회원 전원이 각각 이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획득한 품목
2. ~ 8. (생략)

제12조(사용자의 의무·책임) ① 사용자는 상표 사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생략)

④ -----

----- 업무담당 팀장 -----
-----.

제9조(예외대상) -----

-----.

-----.

1. -----

----- 무농약
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
2. ~ 8.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자의 의무·책임) ① -----

-----.

1. (현행과 같음)

2. 민·형사상 책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

나.·다. (생략)

②·③ (생략)

④ 시장은 사용자단체에 대해서
는 해당 단체별 소속회원 중 2
명 이상을 품질관리책임자로 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사람은 소속 단체회원의 품질관
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3조(관리책임부서 및 품목검
사) ① 시장은 상표관리 분야별
책임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명확히 지정하여 그 관리와 활
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총괄 관리부서: 다음 각 목
의 관리 분야

가. ~ 다. (생략)

2. 품목별 관리부서: 다음 각
목의 전담 분야

가. ~ 라. (생략)

②·③ (생략)

제14조(사용위반 및 처분) ① 시

2. -----
-----.

가. ----- 발생한 -

나.·다.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단체회원 품목-----
-----.

제13조(관리책임부서 및 품목검
사) ① 시장은 -----

총괄 및 품목별 관리부서의 담
당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여 ---
-----.

1. 총괄 관리부서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품목별 관리부서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위반 및 처분) ① ---

장은 사용자가 별표 2의 상표
사용위반 행위를 한 경우 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상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승
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따르지 -----

-----.

② ~ ④ (현행과 같음)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안 제9조 제4호 신설)
-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안 제9조 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예고기간: 2021. 8. 12. ~ 9. 1.(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광양시장 (참조: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 의견 제출할 곳

- 가. 주 소: 우)5774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시보건소(보건행정과)
- 나. 전화번호: 061)797-4106
- 다. 팩 스: 061)797-4151
- 라. 전자우편: yyo626@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2.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진료비 등 감면)을 (예우 및 지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5.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진료비 등 감면) 시장은 광 양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 시설 등에서 장기 등 기증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 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제9조(예우 및 지원)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5.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